



제 439 회 국 회 ( 정 기 회 )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유치원민원의 정의 및 처리 절차 등 신설 〉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373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유치원민원의 정의 및 처리 절차 등 신설 ..... | 2  |
| 2. 개정안 부칙 .....                 | 12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문수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6. 4. 16.
3. 회 부 일 : 2026. 4. 17.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로부터 교직원의 보호와 교직원이 교육활동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유치원 민원의 정의,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 준수사항 미이행 시 조치사항, 민원처리 기구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유치원 민원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며, 민원대응팀 및 교육청의 조직·인력 확보 노력을 규정하여 유치원 민원이 교원의 교육활동, 직원의 업무 및 유치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의6 및 제21조의7 신설).

### Ⅲ. 검토의견

#### 1. 유치원민원의 정의 및 처리 절차 등 신설

#####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2026. 11. 20.에 시행 예정인 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조항(제19조의9)에 더하여, ①유치원민원 정의 명시, ②유치원민원 제기자 의무로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업무방해행위 금지 의무 명시, ③유치원민원대응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치원민원 관련 조항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및 제21조의7 신설 등).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제21조의6(유치원민원의 정의 등)</p> <p>① “유치원민원”이란 보호자가 유치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p> <p>1. 제21조의3에 따른 유아생활지도에 관련된 요구</p> <p>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p> <p>3. 그 밖에 유치원의 운영에 관련</p> |

<신 설>

된 요구

② 유치원민원을 제기하는 자는 「교육기본법」 제13조제3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직원에 대한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유치원민원 제기 과정에서 같은 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의7(유치원민원의 접수와 처리) ① 유치원민원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유치원(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은 제외한다)에 민원대응팀을 두며, 유치원민원의 접수·분류와 처리를 위하여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는 유치원민원대응지원팀 등 유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생략)

지원민원대응기구를 둔다.

② 관할청은 유치원민원의 접수와 처리 또는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유치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 유치원민원의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치원민원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관할청은-----  
-----  
-----  
-----  
-----  
-----  
-----.

② (현행과 같음)

## 나. 검토의견

□ 2026. 11. 20.부터 시행될 예정인 「유아교육법」 제19조의9<sup>1)</sup>는 유치원별 민원 대응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치원민원 처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유치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유아교육법」에서는 「초·중등교육법」<sup>2)</sup>과 달리 유치원

1) 「유아교육법」(법률 제21658호, 2026.5.19. 개정, 2026.11.20. 시행)

제19조의9(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원장이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2.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전자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및 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2. 제1항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3.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③ 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580호, 2026.4.28. 개정, 2026.10.29. 시행)

제35조(학교민원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학교민원"이란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8조의5에 따른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에 관련된 요구
2.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요구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
4.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

②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는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직원에 대한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① 학교민원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두며, 학교민원의 접수·분류와 처리를 위하여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학교민원대응 기구를 둔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또는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 학교민원의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민원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시행만 규정할 뿐 유치원민원의 제기·접수·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한바,

유치원민원 관련 조항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과 같이 ①유치원민원 정의 명시, ②유치원민원 제기자 의무로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업무방해행위 금지 의무 명시 및 위반 시 조치(퇴거 요청 등) 근거 마련, ③유치원민원대응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유치원민원 관련 조항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에 따라 유치원 현장에서 유치원민원을 처리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개정안 대부분은 「초·중등교육법」의 입법례와 동일하나, 민원제기자의 범위 및 이와 연계된 민원제기자의 의무, 위반 시 조치 대상에서는 ‘보호자’로 한정하여 ‘유아 등’은 제외하고 있는데, 유치원 재원 유아의 연령(3~5세) 및 언어·정서 발달 수준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유치원민원 제기자 의무 위반 시 퇴거요청 등 조치 요건에 대해서 교권 및 보호자의 교육 참여권 간의 법익균형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제21조의6제3항에 따르면 유치원민원 제기자 의무 위반 시 퇴거요청 등 조치의 요건은 조치 주체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 조치 주체의 재량에 따라 의무 위반 전이라도 불이익 조치가 가능한바,

이는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조치가 가해져 보호자의 정당한 민원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민원대응지원팀’을 동일 조직 내에서 유치원 담당과 초·중등학교 담당으로 각각 설치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민원 대응과 관련하여 유치원 및 학교에는 개별 유치원 및 학교 별로 민원대응팀이 구성되어 있고, 교육(지원)청에는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민원을 통합하여 관할하는 통합민원팀이 구성되어 있음.

[ 학교(유치원 포함) 민원 대응 체계 및 환경 조성 현황 ]

| 구분    | 기관 단위 대응 체계 구축      |                  | 안전한 민원대응 환경 조성     |                    |                    |
|-------|---------------------|------------------|--------------------|--------------------|--------------------|
|       | 학교민원대응팀<br>(유치원 포함) | 교육(지원)청<br>통합민원팀 | 통화녹음<br>전화기        | 통화연결음              | 민원상담실              |
| 조치 현황 | 14,145교<br>(99.9%)  | 207개<br>(100.0%) | 13,993교<br>(98.8%) | 13,590교<br>(96.0%) | 13,473교<br>(95.2%) |

주: 1. 2025.2.28. 기준임  
 2. 괄호 안은 유·초·중등 및 특수 학교 14,159교, 교육(지원)청 207개 기준 비율임  
 자료: 교육부

[ 민원대응기구 비교 ]

| 구분 | 민원대응팀                         | 민원대응지원팀(통합민원팀)                                            |
|----|-------------------------------|-----------------------------------------------------------|
| 설치 | 유치원 및 각급 학교                   | 교육(지원)청                                                   |
| 업무 | ①민원접수·처리,<br>②관할청 보고 및 지원요청 등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또는<br>특이민원의 접수·검토·처리 등<br>* 교권보호 업무부서 등과 연계 수행 |

그런데 개정안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현재 조직 구조와 달리 교육(지원)청 내 통합민원팀이 유치원 담당과 초·중등학교 담당으로 이원화되는바,

인력 및 예산의 추가 소요, 학교민원과 구별되는 유치원민원의 특수성 여부, 이원화에 따른 정책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원대응지원팀’의 이원화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유치원민원대응기구 설치’ 및 ‘유치원민원 처리 지원 등 요청’에 필요한 사항의 위임에 대해서 그 대상 및 형식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치원민원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교육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위임 대상 및 형식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위임 대상 측면에서 살펴보면, ①‘유치원민원대응기구 설치’의 경우 해당 조항 번호만 인용할 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 ②인용하고 있는 제2항의 내용인 ‘유치원민원 처리 지원 등 요청’이 아닌 유치원민원 처리 계획에서 정하는 ‘유치원민원의 처리 절차 및 방법’을 위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법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다음으로, 위임 형식 측면에서 살펴보면, 교육부령으로 자치사무 영역<sup>3)</sup>(교육청 내부 조직 설치 및 공립·사립유치원 운영)을 규율

---

3)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하게 되어 지방교육자치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바, 교육부장관(국립) 및 교육감(공립·사립)의 소관을 고려하여 위임 형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행정의 통일성이 요구될 경우에는 상위 명령인 대통령령으로, 각 소관을 존중할 필요가 높은 경우에는 각각 교육부령(국립) 및 교육규칙(공립·사립)으로 위임 형식을 고려할 수 있겠음.

넷째, 법률 체계성 제고 측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입법례를 고려하여 개정안의 조문 위치를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교직원의 임무, 자격, 보호 등 교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3장 교직원에 제21조의6(유치원민원의 정의 등)와 제21조의7(유치원민원의 접수와 처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연계 조항인 현행 제19조의9(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의 조문 위치와 「초·중등교육법」의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면 아래와 같이 조문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유아교육법」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체계(개정안 포함)]

| 개정안                          | 수정안                           |
|------------------------------|-------------------------------|
|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                        |
|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
| 제19조의9 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 제19조의9(유치원민원의 정의 등)           |
|                              | 제19조의10 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
|                              | 제19조의11(유치원민원의 접수와 처리)        |
| 제3장 교직원                      | 제3장 교직원                       |
| 제21조의6(유치원민원의 정의 등)          |                               |
| 제21조의7(유치원민원의 접수와 처리)        |                               |
| 제4장 비용                       | 제4장 비용                        |
| 제5장 보칙 및 벌칙                  | 제5장 보칙 및 벌칙                   |

주: 개정안은 음영 및 밑줄로 표기함

다섯째, 연계 조항인 제19조의9(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가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대상을 현행법 또는 ‘공포 후 시행 전 법률’<sup>4)</sup> 중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2026.11.20.부터 시행될 예정인 법률 제21658호 「유아교육법」 제19조의9(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해당 조항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개정안이 2026. 11. 20. 이전에 통과될 경우에는 개정 대상을 현행법이 아닌 법률 제21658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으로 수정함으로써 법률 개정 과정에서의 오류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유치원민원’ 정의 신설에 맞춰 현행법 내 민원 관련 자구를 경미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법률의 제정·개정 시 그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법률이 공포는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의 법률을 말함(「법제기준과 실제」 p.157, 국회사무처 법제실).

## [ 개정안 관련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                                                                                                                                                                                                                                                                                                                                                                                                                                                                                                                                                                                                                         |
|-------------------------------------------------------------------------------------------------------------------------------------------------------------------------------------------------------------------------------------------------------------------------------------------------------------------------------------------------------------------------------------------------------------------------------------------------------------------------------------------------------------------------------------------------------------------------------------------------------------------------|
| <p>○ <b>교육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치원민원의 개념과 교육활동 존중의무, 민원처리 원칙 등을 법제화하여 유치원 현장에서의 이행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li> <li>- 다만, 보호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유치원 교원을 포함한 민원 처리자를 보호하는 절차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 규정을 신설하기보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li> <li>- 또한, 현재 각 시도교육청의 학교민원대응지원팀에서 이미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학교의 민원 대응을 지원 중이므로, 별도의 유치원민원대응지원팀 설치하는 시도교육청의 인력·재정 부담과 비효율 초래할 수 있어 기존 학교민원대응지원팀에서 유·초·중·고 민원을 총괄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li> <li>- 아울러, 유치원에 발생하는 민원은 지역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교육감이 정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li> </ul> |
| <p>○ <b>행정안전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조직법」 제2조5)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보좌기관은 대통령령(직제)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재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이 민원상담센터 운영 등 수행 중이므로, 교육부 내에 국립유치원 민원대응지원팀을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li> </ul>                                                                                                                                                                                                                                                                                                                                                                             |
| <p>○ <b>시·도교육청(대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설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이 병설된 초등학교의 민원대응팀에서 병설유치원까지 관리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li> </ul>                                                                                                                                                                                                                                                                                                                                                                                                                                                                       |

### 5) 「정부조직법」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행정각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제37조제3항 및 제4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을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제31조제2항·제37조제3항·제41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차장·실장·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⑥ ~ ⑩ (생략)

## 2. 개정안 부칙

###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 부칙은 2027년 3월 1일부터 개정법률을 시행하도록 규정함.

#### [개정안 조문]

| 안 부칙                     |
|--------------------------|
| 이 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가장 가까운 신학기 시작 시기 등을 고려하여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동일한 취지로 최근에 개정된 법률 제21580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의 입법례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한 바가 있다는 점<sup>6)</sup>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 개정안 관련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 ○ 교육부

- 시행령 마련 및 집행 준비를 위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6)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580호, 2026.4.28. 개정, 2026.10.29. 시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문 의 처        |
| 02)6788-5187 |